

직원성과급제 시행세칙

제 정 : 2016. 8. 1

제1조(목적) 이 시행세칙(이하 ‘이 세칙’이라 한다)은 직원평정내규 제6조 및 제26조에 의거하여 금강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고 한다) 직원의 성과급제 시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립목표와 연계) ①이 세칙은 본 대학교의 발전성, 지속가능성, 구성원의 자존감을 높여 설립 목표와 비전의 조기 달성을 기조로 운영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전 직원은 발전역량의 총량 제고 지원 즉, 본 대학교의 발전계획과 특성화계획추진, 구성원 만족도 제고, 재정자립도 제고 등 본 대학교의 연도별, 단위사업별 목표를 실현하고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해 발전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지원하여야 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세칙은 본 대학교 정규직 직원과 2년 이상 재직한 계약직 직원에게 적용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기획관리처장은 총장의 결재를 받아 2년 미만 계약직 직원 및 행정조교에게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다.

제4조(주관부서) 직원성과급제 시행을 위한 평가 및 지급업무는 기획관리처장이 주관하며 경영지원팀장이 담당한다.

제5조(직원성과급의 정의) 직원성과급이란 직원평정내규 제26조에 따라 포상 금원을 뜻한다.

제6조(재원) 직원성과급제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교비로 매년 예산에 반영하여 기획관리처장이 총장의 결재를 받아 정한다.

제7조(평가영역) ①직원성과급제 시행을 위해 평가하는 영역은 직원평정내규에 의한 각 평가 영역 중 다면평정, 근무성적평정 등을 대상으로 한다.

②본 대학교 설립이념 구현과 목표의 조기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총장은 주요 대외단위사업의 참여 및 선정 등의 실적을 가점평정 기준점수를 상회하는 점수로 배점할 수 있다. 다만, 사전 예고를 한 경우에 한한다.

제8조(평가단위그룹) ①평가단위그룹은 팀장과 팀원, 정규직과 계약직, 일반직과 기능직 등으로 분류하여 평가할 수 있다.

②평가단위그룹을 정함에 있어 평가단위그룹 인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제1항의 직원간 차이는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9조(평가요소 및 비중 등)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별 비중 등은 다음과 같다.

평가요소	비중 및 평가	비고
다면평정영역	20%	※ 직원평정내규에 따라 적용함.
근무성적평정영역	80%	
가감평정	직원평정내규에 근거해 해당 점수 적용	
조정평정		
경력평정		

제10조(평가대상기간) ①평가 대상기간은 매년 전년도 3월1일부터 당해 년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②회계년도 내 집행 등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관리처장은 직원인사위원회 심의 및 총장의 결재를 얻어 제1항의 평가대상기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.

제11조(등급과 성과급지급기준) 등급과 구성 비율 및 성과급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.

등급	비율 (%)	성과급 지급기준	성과급지급제외	비고
H	20	차등인상률+ A기준	휴직자, 직위해제자, 평가대상기간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	직원 정수와 등급비율이 일치하지 않거나, 당해연도 평정결과 뚜렷한 성과를 거둔 경우 직원인사위원회는 배정 예산과 등급별 비율을 고려하여 등급별 인원을 조정건의 및 총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할 수 있다.
A	60	기본임금인상률 + B기준		
B	20	호봉 동결(or 호봉 승급)		

제12조(평가결과 통보) ①기획관리처장은 성과급제 평가결과를 매년 2월 중에 대상 직원에게 개인별로 통보한다.

제13조(개선업적 공유) ①직원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등급 심사과정에 H등급 내지 A등급 해당 직원 중 그 업적이 뛰어나 동료직원들에게 전파 확산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산 대상자 수와 그 업적들을 정하여야 한다.

②기획관리처장은 매 학년도말을 전후로 총장의 결재를 받아 전체직원회의 등을 이용하여 전체 직원에게 제1항의 전파확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14조(성과급 지급) 성과급은 매년 2월 중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,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.

제15조(비밀 유지) 성과급 등급 결과 등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정보에 대하여는 교내외에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16조(보칙) 이 세칙에 없는 사항은 직원인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위원장이 총장의 결재를 받아 정한다.

부 칙

1. 이 세칙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